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< 수정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4조(특별휴가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 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,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</p> <p>1.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.</p> <p>2.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이내</p> <p>3.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30일 이내(단, 제1호 및 제2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60일 이내)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4조(특별휴가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.</p>	<p>제14조(특별휴가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제1호의 새내기 도약휴가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1.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: 5일</p> <p>2.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: 10일</p> <p>3.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: 20일</p> <p>4.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: 30일</p> <p>5. 제2호 및 제3호의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 <p><삭제></p>